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근로자 포함 등〉
■ 김정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059호)

2026. 7.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문위원 박 혜 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정호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9. 17.
3. 회 부 일 : 2025. 9. 1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사의 충실의무와 관련하여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을 정하고 있고, 유지청구권에 대하여도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 감사 또는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에 대해서만 청구적격을 인정하고 있음.

그런데 외국인투자기업이 기업의 노동자 및 지역사회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을 방기한 채 일방적으로 회사청산계획을 발표하고 사업의 철수를 결정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바, 이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사가 직무수행 시 근로자의 이익을 고려하도록 구체화할 필요가 있고 유지청구권이나 회사의 해산 등 고용과 노동조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의 절차에 있어서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사가 직무 수행에 있어 회사의 근로자의 이익을 고려하도록 하고, 유지청구권의 요건 및 그 청구권자에 근로자 관련 부분을 추가하

며, 회사의 해산이나 영업의 양도에 있어서 근로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369조의2, 제382조의3, 제402조 및 제517조의2).

Ⅲ. 검토의견

1. 개정안의 내용 및 취지

□ 개정안은 ① 이사가 직무 수행 과정에서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추가로 근로자의 이익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382조의3제3항 신설), ② 주요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있어서의 고려 기준을 제시하며 (안 제369조의2 신설), ③ 이사의 법령·정관 위반행위에 대한 유지청구권의 행사요건 및 청구권자를 확대하고(안 제402조), ④ 고용영향이 큰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영업양도·해산 등을 결의하고자 하는 경우 6개월 이상의 인수자모색절차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안 같은 조 제3항), 회사의 경영상 의사결정 및 주요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있어서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2. 구체적 검토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 등)	<u>제369조의2(주요주주의 의결권 행사) 제542조의8제2항제6호에 따른 주요주주는 의결권 행사 시 회사·총주주 및 근로자의 장기적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u>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 등)

현행	개정안
① . ② (생략) <u><신설></u> 第402條(留止請求權) 理事가 法令 또는 定款에 違反한 行爲를 하여 이로 因하여 <u>會社</u>에 回復할 수 없는 損害가 생길 念慮가 있는 境遇에는 監事 또는 發行株式의 總數의 100分の 1이상에 해당하는 株式을 가진 <u>株主</u>는 <u>會社</u>를 爲하여 理事에 對하여 그 行爲를 留止할 것을 請求할 수 있다. <u><신설></u>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u>이사는 그 직무의 수행에 있어서 회사의 근로자의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u> 第402條(留止請求權) ----- ----- ----- <u>회사·주주 또는 근로자에게</u>----- ----- ----- <u>주주, 회사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해당하는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회사의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포함한다)은 회사·주주 또는 근로자를</u>----- ----- -----. <u>제517조의2(고용영향이 큰 회사의 해산 또는 영업양도에 관한 특별)</u> ①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용영향이 큰 회사가 제374조제1항 각 호의 행위(회사 영업의</u>

현행	개정안
	<u>전부를 양도하거나 폐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행위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7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를 인수하거나 영업을 양수할 자를 찾기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이하 “인수자모색 절차”라 한다)를 6개월 이상 진행한 뒤 제374조제1항에 따른 결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사에 관한 회생절차의 계속 중에는 제374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위한 결의를 하지 못한다.</u> <u>②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용영향이 큰 회사가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산하기 위하여 제517조제2호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를 하는 경우에 준용한다.</u> <u>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인수자모색절차를 진행하는 회사는 근로자, 노동조합, 채권자 등</u>

현행	개정안
	<u>회사의 이해관계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인수자모색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하여야 한다.</u> <u>④ 제374조제1항 각 호의 행위 또는 해산을 하려는 회사에 인수자모색절차를 진행하기 곤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다.</u>

(1) 이사의 충실의무 내용 확대 (안 제382조의3제3항 신설)

□ 현행법은 주식회사의 기관인 이사가 ①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 및 주주¹⁾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할 의무 및 ②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²⁾ 보호하여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우하도록 할 의무를³⁾ 부담하는 것으로

1) 주주는 특정 주주나 개별 주주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실질적인 이익이 귀속되는 주체인 "주주 전체"를 의미함. 이하 이 규정에 대한 설명은 법무부, 「기업 조직개편 시 이사의 행위규범 가이드라인」, 2026.에 따른 것임.

2) "총주주의 이익"이란 주주 전체를 하나의 집단으로 보아 그 집합적인 이익을 보호한다는 의미로, 단기적 이익이 아닌 기업의 지속가능한 장기적 전망까지 고려한 장기적 이익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함.

3) "전체주주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우할 의무"란 귀속되는 이익이 주주들 사이에서 공정하게 분배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지배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경우와 같이 주주간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하며, 개별 주주를 기계적으로 동일하게 대우하려는 것이 아니며, 중요한 것은 회사와 전체 주주의 이익의 관점에서 정당화될 수 있는 사유 없이 일부 주주의 권익이

로 규정하고 있고, 이를 “이사의 충실의무”라고 함(제382조의3).⁴⁾

- 이러한 “이사의 충실의무”는 종전에는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의무의 형태로 규율되어 있었으나,⁵⁾ 지배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일반주주의 이익이 충분하게 보호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⁶⁾ 2025. 7. 22. 법률 제20991호 개정으로 현재와 같은 형태로 규정되었음.

□ 개정안은 이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근로자의 이익을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사의 경영상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 근로자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게 하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과 회사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입법목적을 가진 것으로 보임.

- 다만, 이 법은 사원과 회사의 권리·의무, 회사의 의사결정, 회사의 업무집행 및 대표행위 등과 같이 단체의 내부적인 조직을 중심으로 하는 단체법적 규율, 회사와 제3자(다른 회사 등) 간의 거래에 관한 규정, 회사와 회사채권자 간의 법률관계에 관한 규정, 주식의 양도

다른 주주에 비해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는지의 여부임.

- 4) 「상법」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 등)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 5) 「상법」(2025. 7. 22. 법률 제20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6) 다만, 이러한 충실의무 규정은 이사와 회사 간 또는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간 이해상충이 존재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에 적용될 수 있음.

에 관한 규정과 같은 거래법적 규율 등을 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된 법령이라는 점에서, 개정안과 같이 근로자의 이익에 관한 규율을 이 법에 두는 것에 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7)8)

현행	개정안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 등) ① · ② (생략) <u><신설></u>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u>③ 이사는 그 직무의 수행에 있어서 회사의 근로자의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u>

(2) 주요주주의 의결권 행사 원칙 도입 (안 제369조의2 신설)

□ “주요주주”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발행주식총수⁹⁾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이사·집행임원·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상장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로 해당 상장회사의 독립이사가 될 수 없음(현행 제542조의8제2항제6호).¹⁰⁾

7) 예를 들어, 회사 경영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이익 등을 고려하기 위한 법률로는 우리사주조합 등을 규정하고 있는 「근로복지기본법」 등이 있음.

「근로복지기본법」 제32조(우리사주제도의 목적)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로 하여금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해당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주식회사(이하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라 한다)의 주식을 취득·보유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사회적 지위향상과 노사협력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8) 이와 관련하여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2183호, 2025. 8. 14. 발의)」은 개정안의 취지와 유사하게 ①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근로자를 추가하고, ② 이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와 근로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주주와 근로자의 이익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공평하게 대우하려는 내용임.

9)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

- 이러한 주요주주가 회사와 거래하는 경우 자기거래에 해당하므로
이사회 승인이 필요하고, 상장회사의 신용공여 등의 거래상대방
이 될 수 없음(제398조 및 제542조의9).¹¹⁾

□ 개정안은 이와 같은 주요주주가 회사·총주주 및 근로자의 장기적
이익을 고려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려는 내용으로, 회사의 경
영상 의사결정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있는 주요주
주의 의결권 행사시 고려요소를 법에 명시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주요주주는 법령·정관 위반행위 등과 관련하여 “이사”로 간주되는
업무집행관계자(제401조의2제1항¹²⁾)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10) 「상법」 제542조의8(독립이사의 선임) ② 상장회사의 독립이사는 제382조제3항 각 호 뿐만 아
니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6.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
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이사·집행임원·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상장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이하 “**주요주주**”라 한다) 및 그의 배
우자와 직계 존속·비속

11) 「상법」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 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하고, 그 거래의 내용과 절차는 공정하여야 한다.

1. 이사 또는 제542조의8제2항제6호에 따른 **주요주주**

제542조의9(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① 상장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그를 위하여 신용공여(금전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
여, 채무이행의 보증, 자금 지원적 성격의 증권 매입, 그 밖에 거래상의 신용위험이 따르는
직접적·간접적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여
서는 아니 된다.

1. **주요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

12) 「상법」 제401조의2(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지시하거나 집행한 업무에 관하여 제399조, 제401조, 제403조 및 제406조의2를 적용하는 경우
에는 그 자를 “이사”로 본다.

1.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

2. 이사의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자

3.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

주요주주에 대해 이사의 충실의무(제382조의3¹³⁾)에 준하는 사항을 규정하려는 개정안의 내용은 긍정적인 측면이 인정될 수 있음.

- 다만, 주요주주가 고려해야 하는 “장기적 이익”이라는 개념이 다소 불명확한 측면이 있으며, 주주의 의결권 행사는 주주 개인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는 점을 심사시 고려할 필요가 있음.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69조의2(주요주주의 의결권 행사) 제542조의8제2항제6호에 따른 주요주주는 의결권 행사 시 회사·총주주 및 근로자의 장기적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

(3) 유지청구권 행사 사유 및 청구권자 확대 (안 제402조)

- 현행 제402조는 이사가 법령·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이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¹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감사 또는 발행주식총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를 위하여 해당 이사에 대해 그 행위를 보류 또는 중지하도록

13) 「상법」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 등)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14)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란, 손해의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뿐만 아니라 비용·수고 등에 비추어 손해의 회복이 매우 곤란한 경우로, 손해배상청구 등의 사후적 구제로는 회복할 수 없는 경우 등을 의미함.

하는 유지(留止) 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음.¹⁵⁾

- 개정안은 ① 유지청구권의 행사사유에 주주 또는 근로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를 추가하여 이사의 법령·정관 위반 행위와 관련하여 주주 및 근로자를 폭넓게 보호하고, ② 청구권자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¹⁶⁾”을 추가하려는 내용으로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해 회사의 주요 이해관계자인 근로자에게 통제권을 부여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현행	개정안
第402條(留止請求權) 理事가 法令 또는 定款에 違反한 行爲를 하여 이로 因하여 <u>會社</u> 에 回復할 수 없는 損害가 생길 念慮가 있는 境遇에는 監事 또는 發行株式의 總數의 100分の 1이상 에 해당하는 株式을 가진 <u>株主</u> 는 <u>會社</u> 를 爲하여 理事에 對하여 그 行爲를 留止할 것을 請求할 수 있다.	第402條(留止請求權) ----- ----- ----- <u>회사·주주 또는 근로자에게</u> ----- ----- ----- <u>주주, 회사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해당하는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회사의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포함한다)은 회사·주주</u>

15) 「상법」 제402조(유지청구권)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이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감사 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를 위하여 이사에 대하여 그 행위를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현행	개정안
	또는 근로자를----- ----- -----.

□ 한편, 현행 유지청구권의 법적 성격, 행사요건 및 관련 법률과의 체계적 정합성 등을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사시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 첫째, 유지청구권은 이사 등 경영진이 법령·정관을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도 법인인 회사가 직접 그 행위를 통제할 수 없으므로, 소수주주권자가 회사를 위하여 경영진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게 한 예외적 감독권한으로 보아야 함.
- 둘째, 개정안에서 유지청구권의 행사요건으로 추가하려는 “근로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는 그 자체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노동쟁의” 대상에 해당할 수 있는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16) 개정안에는 정의가 없으나, “노동조합”은 일반적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개념으로 판단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나.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 경우

다. 공제·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라. 삭제 <2025. 9. 9.>

마.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5호는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근로자의 지위 기타 대우등 근로조건의 결정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가 “노동쟁의”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¹⁷⁾

○ 셋째, 개정안의 법문은 행사요건과 신청권자를 일괄하여 추가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규정하는 경우 “근로자”에게만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도 직접 이해관계가 없는 “주주”가 유지를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임.

(4) 인수자모색절차 등 고용영향이 큰 회사의 해산 또는 영업양도에 관한 특례 도입 (안 제517조의2 신설)

□ 개정안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용영향¹⁸⁾이 큰 회사가 영업의 전부양도·폐지나 해산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수자모색절차”라는 절차를 6개월 이상 진행한 경우에만 주주총회에서 해당 안건을 결의할 수 있도록 하고, ② 인수자모색절차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회사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개

1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이하 “노동관계 당사자”라 한다)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근로자의 지위 기타 대우등 근로조건의 결정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 및 제92조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사항에 관한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주장의 불일치라 함은 당사자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18) 「고용정책 기본법」 제13조(고용영향평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정책이 일자리 증감 및 고용의 질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이하 “고용영향평가”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정책의 수립·시행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며, ③ 회사에 관한 회생절차의 계속 중에는 영업의 전부양도·폐지 또는 해산을 위한 주주총회의 결의를 금지하려는 내용으로, 회사가 고용승계 등을 위한 인수자 모색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주주총회에서 영업의 전부양도·폐지 또는 회사 해산결의를 금지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고 해당 회사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개정안에 따른 “인수자모색절차”란 근로자, 노동조합, 채권자 등 회사의 이해관계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회사를 인수하거나营业을 양수할 자를 찾기 위한 절차를 의미함.

현행	개정안
<신설>	제517조의2(고용영향이 큰 회사의 해산 또는 영업양도에 관한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용영향이 큰 회사가 제374조 제1항 각 호의 행위(회사 영업의 전부를 양도하거나 폐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행위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7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를 인수하거나 营业을 양수할 자를 찾기 위한 대통령

현행	개정안
	<u>령으로 정하는 절차(이하 “인수자모색절차”라 한다)를 6개월 이상 진행한 뒤 제374조제1항에 따른 결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사에 관한 회생절차의 계속 중에는 제374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위한 결의를 하지 못한다.</u> <u>②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용영향이 큰 회사가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산하기 위하여 제517조제2호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를 하는 경우에 준용한다.</u> <u>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인수자모색절차를 진행하는 회사는 근로자, 노동조합, 채권자 등 회사의 이해관계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인수자모색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하여야 한다.</u> <u>④ 제374조제1항 각 호의 행위 또는 해산을 하려는 회사에 인수자모색절차를 진행하기 곤란</u>

현행	개정안
	<u>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다.</u>

- 다만, 이 법은 주주총회의 결의사항, 절차 및 요건 등에 관한 일반적인 규율을 하기 위하여 마련된 법령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문의처
02)6788-5055